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서민·중산층·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(2024. 8. 28, 관계부처 합동)’에 따라,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·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각종 신청서식 상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,

규제개선 건의사항 및 법제처의 ‘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’ 등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의 자구·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 건축물이”를 “이란 건축물의”로, “경우에 한한다)·재축·증축”을 “경우로 한정한다)·재축·증축”으로, “것에 한한다)”를 “것으로 한정한다)”로, “새로이”를 “새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”으로, “생성하여야 한다”를 “생성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될 것
2.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

제14조제2항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”로, “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”을 “건축물대장”으로, “폐쇄하여야”를 “폐쇄해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제15조제2항은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제15조제2항·제16조제2항은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

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”를 “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,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제5항 중 “제12조제5항은 제2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제12조제5항은 제3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,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.
1. “생성”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·개축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)·재축·증축(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)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.	1. ----이란 건축물의 -----경우로 한정한다)·재축·증축-----것으로 한정한다) ----- ----- ----- 새로 -----.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건축물대장의 생성) ①·② (생략)	제12조(건축물대장의 생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----- ----- ----- 생성해야 한다.
<신설>	1.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될 것
<신설>	2.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

④·⑤ (생략)

제14조(건축물대장의 재작성) ①
(생략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.

제16조(건축물대장의 합병) ①·② (생략)

③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

④ (생략)

제17조(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) ①·② (생략)

③ 제15조제2항·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.

제20조(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)

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

합할 것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건축물대장의 재작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-----
건축물대장-----

----- 폐쇄해야
-----.

제16조(건축물대장의 합병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-----
----- 관하여는
제15조제2항을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-----

----- 관하여는 제15
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을 ---
-----.

제20조(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)

①-----

----- 경우-----

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·임야 분할·합병 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)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1조(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) ① ~ ④ (생략)

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.

제22조(건축물의 해체·멸실 등에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
외에, -----

----- 따라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제2항 -----
-----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
-----.

제22조(건축물의 해체·멸실 등에

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~
 ③ (생 략)
 ④ 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
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.

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) ① ~
 ③ (현행과 같음)
 ④ 제3항 -----
 ----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
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837